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1 - 69호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10월 5 일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가. 6.25사변시 위기에 놓인 우리나라를 목숨을 바쳐 자유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방국가 젊은이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영원히 기리고,
- 나. 구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함과 동시에 참전국과의 유대강화는 물론 자유 수호의 실증적인 교육의 장으로 1984년 온 시민의 정성으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 건립되었으며,
- 다. 인천상륙작전 관련 유물 및 자료, 당시 남·북한 무기 등이 전시되어 있음.
- 라. 인천상륙작전기념관 건립에 따라 제정된 조례내용 중 당시 사

용했던 일부 조문 및 시설물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와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등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정당시 사용했던 일부 조문과 법제처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내용 등을 정비함.(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8조, 안 제9조)

나.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0월 24일(월)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시의회문화복지전문위원실,전화032-440-6224, 팩스 032-440-876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구월동 1138)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
- FAX : 032)440-8764
- E-mail : jbt129@korea.kr(전화 : 032-440-6224)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반공”을 “안보”로,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으로 한다.

제2조 중 “기념관”을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로, “남구 옥련동 513번지”를 “연수구 청량로 138(옥련동 525)”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반공의식”을 “안보의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시장”을 “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반공 목적으로 하는”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3년으로”를 “3년 이내로”로 한다.

제5조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범위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2항에 따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4. 공익목적을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

제9조 중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인천상륙작전기념관 시설 사용료(제8조 관련)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1. 시설사용료 ○ 영상관	가. 1 일 (09:00~22:00) 나. 오전 (09:00~12:00) 다. 오후 (13:00~18:00) 라. 야간 (18:00~22:00)	50,000원 15,000원 20,000원 20,000원	단, 법정공휴일은 주간만 가능
2. 냉·난방 ○ 영상관	1회(1시간)	20,000원	○ 매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50퍼센트를 가산 징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설치) 6.25사변시 호국의 계기가 되었던 인천상륙작전을 기념하고 국민의 <u>반공</u> 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u>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u> 을 둔다.	제1조(설치) ----- ----- ---- <u>안보</u> ----- ---- <u>인천상륙작전기념관</u> ----
제2조(위치) <u>기념관</u> 은 인천광역시 <u>남구 옥련동 513번지</u> 에 둔다.	제2조(위치) <u>인천상륙작전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u> ----- <u>연수구청량로 138(옥련동 525)</u> -----
제3조(사업) (생략) 1. ~ 2. (생략) 3. 국민의 <u>반공의식</u>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 4. <u>기타</u> 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사업) (현행과 같음) 1. ~ 2. (현행과 같음) 3. ---- <u>안보의식</u> ----- ----- 4. <u>그 밖에</u> ----- -----
제4조(위탁관리) ① <u>시장</u> 은 기념관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u>반공</u>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위탁관리) ① <u>인천광역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 ----- <u><삭 제></u> ----- ----- -----

현행	개정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 위탁 기간은 <u>3년으로</u> 하고, 관리를 위탁 받은 민간단체(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그 관리에 관하여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5조(위탁관리의취소) 시장은 수탁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이 조례에 <u>의한</u> 시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 5. <u>기타</u>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사용허가) ① 수탁관리자는 기념관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u>범위내에서</u> 그 시설의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 사용료는 별도의 조례로 <u>정한다.</u>	② 제1항에 따른 ----- ----- <u>3년 이내로</u> ----- ----- ----- ----- 제5조(위탁관리의취소) ----- ----- <u>어느 하나에</u> ----- ----- 1. ~ 3. (현행과 같음) 4. ----- <u>따른</u> ----- ----- 5. <u>그 밖에</u> ----- ----- 제8조(사용허가) ① ----- ----- <u>범위에서</u> ----- ----- -----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 <u>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u> <u>·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u> <u>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u> <u>일부 감면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된 사용료는 기념관의 관리 운영비에 충당하고 년도별 결산서를 익년도 1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기념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관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수탁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1. <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 면제</u> 2. <u>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행사 등을 주최·주관하는 경우 : 면제</u> 3. <u>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천광역시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로서 공익목적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u> 4. <u>공익목적에 위한 행사로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u> ③ 제2항에 따라 ----- ----- ----- ----- ----- 제9조(운영비 보조) ----- ----- ----- 범위에서 ----- -----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 당 없 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없 음”
관련자료	“해 당 없 음”